서 울 특 별 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3707-8134 / 전송 (02) 3707-8149
처리부서 : 도로계획과(서소문제2별관 3층) 과 장 : 김영걸, 담당사무관 : 안병직, 담 당 : 김갈남

문서번호 도계58700 - 1804

시행일자 1998.10.22.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건 설 국 장	전 결	10/24	
도로계획과장	협조	법무담당관 심사필	결재 1998. 10. 21 건설국장
기안	김갈남	도로1담당사무관	협조

고시·공고 1998. 10. 27 제1998-560호

98.

제목 특별시도 노선인정 및 공고

1. 건설교통부 도정58070-931호('98. 7.27)와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특별시도 인정인가를 득한 「성산~진관내선(노선번호 제0111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하고, 같은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을 공고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결 건설국장 최 재 범

(제2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도로정책과장

제목 특별시도 노선인정 보고

1. 건설교통부 도정58070-931호('98. 7.2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특별시도 인정인가를 득한 「성산~진관내선(노선번호 제0111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하고, 같은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을 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붙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1부. 끝.

원본대조필
직. 도목 6
성명 김갈남

서 울 특 별 시 장

전결 건설국장 최 재 범

(제3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특별시도 노선인정 통보

1.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특별시도 인정인가를 득한 「성산~진관내선(노선번호 제0111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하고, 같은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공고 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부서에 동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결 건설국장 최 재 범

건설국장

수신처 자치행정과장, 재산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 공원녹지과장, 조경과장, 시설계획과장, 지리정보과장, 교통기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건설행정과장, 도로운영과장, 하수계획과장, 주택재개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지도과장,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2부장, 교량관리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공정관리부장, 설계감리부장), 은평구청장(토목과장), 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 마포구청장(토목과장),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제4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의뢰

1. 「성산~진관내선(노선번호 제0111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도 노선인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문 2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원본대조필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560 호

접수심사	1998 10 21	제 609 호
담당자	법제심사관리	법무담당관
이승복	전결	이종빈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안)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1. 도로노선 인정내역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km)	전용구간연장 (km)	중용구간연장 (km)	비고
특별시도	성산~진관내선	0111	성산교 (성산동 557)	고양시 시계 (진관내동 1-5)	12.56	증산로 연서로 북한산길	5.63	국도1호선 (성산교~연신내R) 6.93	

1998. 10. 21 전설국장

2.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에관한조례" 시행일 이전의 위 노선에 대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에 의한다.

원본대조필
직 [illegible]
성명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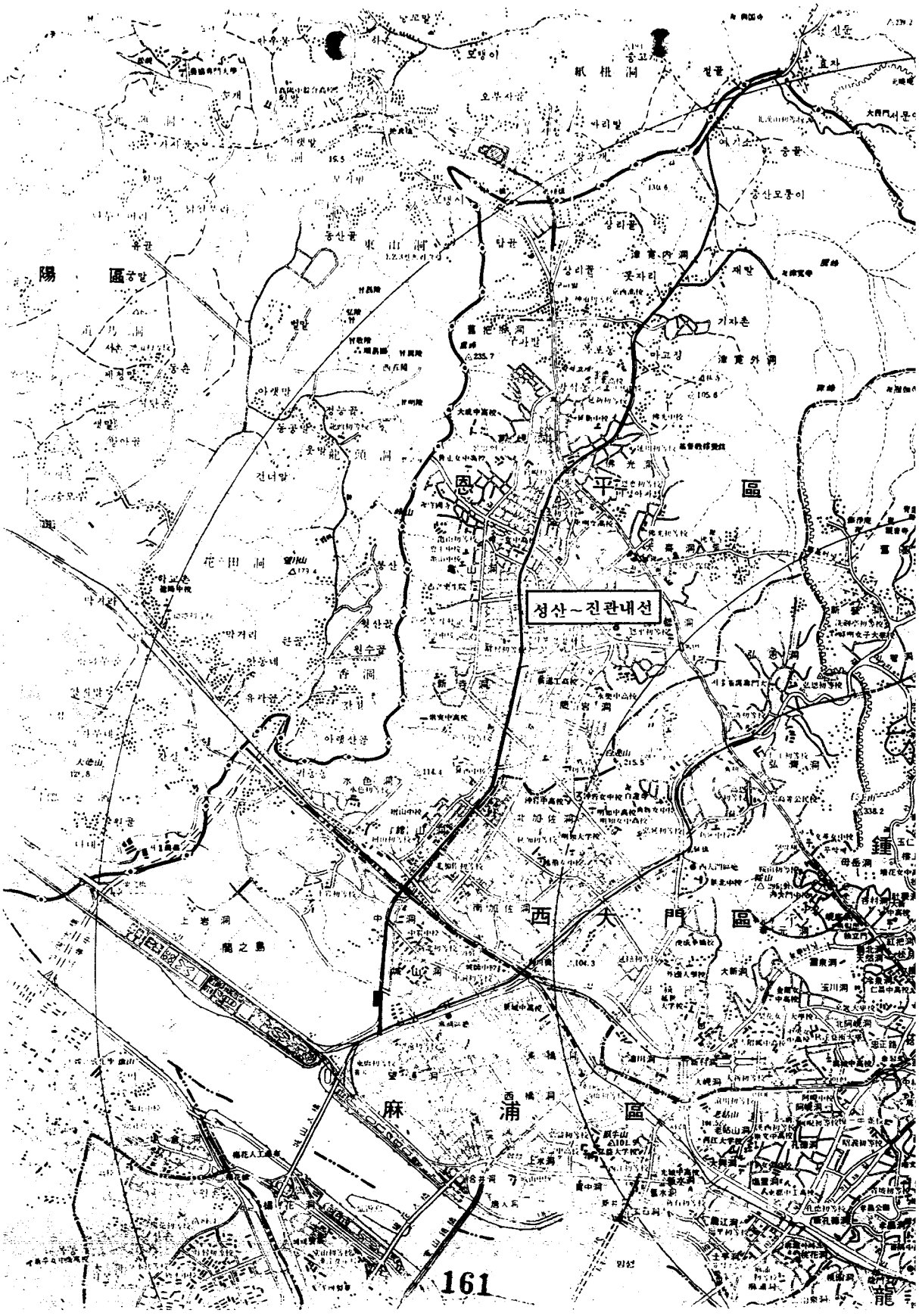
성산~진관내선
陽 區
恩 平 區
西 大 門 區
麻 浦 區
鍾
龍
東山洞
花田洞
香洞
上岩洞
龍頭洞
紙柱洞